

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-40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19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“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”의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기간 만료일(2024. 6. 30.)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안산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위탁사무명

-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

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)
- 「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·운영)
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○ 필요성

-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설로
-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한 퇴비화는 미생물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운전(수분, 온도, 산소 등)제어 및 계절별로 변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성상의 이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운전 경험이 필요함.

□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

- 민간위탁 기간 : 2024. 7. 1. ~ 2027. 6. 30.(3년)
- 민간위탁 사무내용
 -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

□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45(성곡동)
- 규모
 - 연면적 : 4,375.68m²(지하 2층, 지상 3층)
 - 시설용량 : 200톤/일(호기성 퇴비화)
 - 주요설비
 - 발효조 A(910m³×1기) + B(910m³×1기) = 15일 체류
 - 후숙조 A(910m³×1기) + B(660m³×1기) = 21일 체류
 - 악취방지시설 : 2,000m³/분×1기(고농도), 1,000m³/분×1기(저농도)
 - 유분회수시설 : 10m³/h×1기
- 운영인력 : 29명(직접인력 22명, 간접인력 7명)
- 위치도



수탁자 선정방식

- 제한경쟁,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 **【붙임 2】**

예산수반사항 : **【붙임 3】**

방침결정문 : **【붙임 4】**

향후 추진계획

- 일상감사 의뢰 : 2024. 3월
- 입찰공고(45일) *사전 규격공개 포함 : 2024. 4월 ~ 5월
-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: 2024. 4월 ~ 5월
- 위탁운영 업체 선정 및 계약 : 2024. 6월
- 위탁운영 실시 : 2024. 7월